

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(제212조제2항 관련)

1.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,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- 가. 강의실
 - 나.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
 - 다. 사무실·화장실·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
 - 라.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자료 열람시설
2. 단위시설의 기준
 - 가.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, 1제곱미터당 1.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
 - 나.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해야 하고,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「먹는 물 관리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
 - 다. 채광시설·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,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
 - 라. 방음시설은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, 소방시설은 「소방법」에 따른 소방기구·경보설비·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
3. 장비
 - 가. 교육용 위험물 등급 표찰 자료(각 등급별로 보유해야 한다)
 - 나. 교육용 위험물 취급 표찰 자료(해당 연도 발행분만 적용한다)
 - 다. 위험물 화주신고서, 항공운송장, 위험물 사고·준사고 보고서 사본
 - 라. 시청각교육 보조장비: TV, VTR, OHP 등
 - 마. 국제민간항공기구, 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위험물 관련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및 기타 지침서
 - 바. 한글로 작성된 교육교재(다만, 한글을 사용할 수 없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는 해당 언어로 교육교재를 작성할 수 있다.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.
 - 가. 국제민간항공기구, 국제항공운송협회,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 - 나. 국제민간항공기구, 국제항공운송협회,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교육시험 합격 증명을 받고 항공위험물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